

2004.4.26(월) 10:00

#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김 제 시

#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	2004
번호	-10

제출년월일 : 2004. 3 . .  
제 출 자 : 김 제 시 장

## 1. 개정이유

○리·통장의 임기가 변동(2년, 1회에 한하여 연임)됨에 따라 리·통장 사기진작을 위하여 리·통장자녀장학생 선발 자격기준(현행2년이상)을 완화하고, '04 중학교의무교육시행으로 김제시리·통장자녀장학금 중학생 선발자격요건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김제시리·통장자녀장학금 장학생의 자격요건을 리·통장으로 “2년이상 근속한 자”에서 “1년이상 근속한 자”로 개정(제3조제3항)
- '04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으로 중학생 선발자격요건 삭제 (안 제3조제3항, 제5조제2항, 제7조, 제8조 “중·고등학생”를 “고등학생”으로 개정함)

## 3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규정

- 김제시리.동이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
- 김제시장학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록

나. 기 타 : 입법예고(2004. 2. 20 - 3.11) - 특이사항없음

##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중 “2년이상 근속한 자의 중·고등학생 자녀” 를  
“1년이상 근속한 자의 고등학생자녀” 로 한다

제5조제2항중 “중학생·고등학생·대학생”을 “고등학생·대학생”으로 한다

제7조 및 제8조중 “중·고등학생”을 “고등학생”으로 한다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장학생의 자격)</p> <p>①~②(생략)</p> <p>③이·통장자녀장학금 장학생은 이·통장으로 <u>2년이상</u> 근속한 자의 <u>중·고등학생 자녀</u>로서                      학업성적이 미 평점 또는 50점 이상이거나 예능·기능·체육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 한다</p> <p>④~⑤(생략)</p> <p>제5조(선발)</p> <p>①(생략)</p> <p>②일반장학금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그 배정비율은 <u>중학생·고등학생·대학생별 당해연도의 신청자수</u> 등을 고려하여 형평에 맞도록 배정한다. 다만 이·통장자녀 장학금 및 특별장학금 장학생 신청자는 제외한다</p> <p>③(생략)</p>	<p>제3조(장학생의 자격)</p> <p>①~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-----                      이·통장으로 <u>1년이상</u> 근속한 자의 <u>고등학생 자녀</u>로서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70점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</p> <p>④~⑤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선발)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<u>고등학생</u>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</p> <p>③(현행과 같음)</p>

